

의안번호	2218673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6.7.29.
추계번호	26D239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치경찰지원관을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6억 4,200만원, 2032년 28억 8,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6억 7,400만원(연평균 27억 3,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치안행정협의회 (안 제48조)	64	64	64	64	64	320	64
자치경찰지원관 (안 제58조)	2,578	2,572	2,652	2,734	2,818	13,354	2,671
합계	2,642	2,636	2,716	2,798	2,882	13,674	2,735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치안행정협의회(안 제48조), 자치경찰지원관(안 제58조)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 치안행정협의회(안 제48조)는 의무규정, 자치경찰지원관(안 제58조)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16개 시·도에 경무관 직급의 자치경찰지원관을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경찰청장은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	의무규정
2	안 제24조제1항 단서(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제32조제4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자치경찰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사무지원 인력을 국가직에서 자치경찰본부(지방)로 이전하고,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시·도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2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33조(자치경찰의 조직 및 정원)·제42조 제3항(무기와 장비의 사용)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그 소속으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이 휴대·사용하는 경찰장비에 국가경찰 장비와 구별되는 표지를 부착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34조(자치경찰본부장)·제35조(자치경찰대장)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두어 자치경찰 지휘부 고위직을 신설	의무규정
5	안 제36조(112종합상황실)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은 112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의무규정
6	안 제48조(치안행정협의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둠	의무규정
7	안 제50조제3항(예산과 처우)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함	의무규정
8	안 제51조(자치경찰특별회계의 설치)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	의무규정
9	안 제58조(자치경찰지원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과 시·도의 협력·조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자치경찰지원관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 개발의 지원 등)	—	현행법에 따라 이미 수행 중인 사업으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2	안 제24조제1항 단서(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제32조제4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X	국가직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사무·인력 규모 및 위원회 설치 규모 등을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안 제33조(자치경찰의 조직 및 정원)·제42조제3항(무기와 장비의 사용)	X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의 별도 청사·조직 규모, 이원운영 비용 및 표지 부착 대상 장비 규모 등을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4	안 제34조(자치경찰본부장)·제35조(자치경찰대장)	X	신설되는 지휘부 직위·계급별 정원 및 직급 상향 규모를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36조(112종합상황실)	X	112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모 및 국가경찰 파견 규모 등을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6	안 제48조(치안행정협의회)	O	—
7	안 제50조제3항(예산과 처우)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비용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8	안 제51조(자치경찰특별회계의 설치)	X	특별회계 재원(과태료·범칙금 등) 규모 및 국가 보조 규모를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9	안 제58조(자치경찰지원관)	O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가 가능한 치안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자치경찰지원관 임용에 한정하여 추계
 - 치안행정협의회(안 제48조)는 16개 시·도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협의회별로 민간위원 4명이 연 4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
 - 자치경찰지원관(안 제58조)은 16개 시·도에 각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도지사 소속 신설 직위인 점을 고려하여 3급 상당의 경찰공무원인 경무관을 기준으로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를 산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기준)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4%	2.1%	2.3%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치안행정협의회(안 제48조)

- 본 추계에서는 16개 시·도에 치안행정협의회를 각 1개씩 설치하고, 협의회별로 민간위원 4명이 연 4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참석건수와 참석수당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참석건수는 매년 256건(=16개 시·도×위원 4명×4회)
 - 참석수당은 2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16개 시·도에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6,4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3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치안행정협의회 참석수당 추계: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참석 건수(a, 건)	256	256	256	256	256
참석수당(b, 만원)	25	25	25	25	25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64	64	64	64	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자치경찰지원관(안 제58조)

- 본 추계에서는 16개 시·도에 자치경찰지원관 1명씩(경무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를 산출
 - (보수) 16명의 보수 총액은 2028년 21억 3,300만원, 2032년 24억 100만원으로 추정
 - 2026년 경찰청 본부 기준 경무관의 1인당 보수(「2026년도 예산 세출각목명세서」상 경찰청 인건비 기준)는 1억 2,566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연도별 보수 추계

[표 4] 자치경찰지원관 보수 추계: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인원(a, 명)	16	16	16	16	16
보수(b, 만원)	13,331	13,731	14,143	14,567	15,004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2,133	2,197	2,263	2,331	2,4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2028년 8,100만원, 2032년 9,100만원으로 추정
 - 2026년 예산안 기준 경찰청의 기본경비 비율 3.8%를 앞서 추정된 보수 총액에 곱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 2028년 2억 8,100만원, 2032년 3억 2,600만원으로 추정²⁾
- (자산취득비) 임용 첫 해인 2028년에만 발생하며 8,300만원으로 추정³⁾

[표 5] 자치경찰지원관 기본경비 등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기본경비	81	83	86	89	91
기관부담금	281	292	303	314	326
자산취득비	83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16개 시·도에 자치경찰지원관을 임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5억 7,800만원, 2032년 28억 1,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3억 5,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자치경찰지원관 인건비 추계결과: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보수	2,133	2,197	2,263	2,331	2,401	11,325
기본경비	81	83	86	89	91	430
기관부담금	281	292	303	314	326	1,516
자산취득비	83	—	—	—	—	83
합계	2,578	2,572	2,652	2,734	2,818	13,3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앞서 추정된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요율(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 2031년 13.475%, 2032년 13.571%)을 곱하여 산출
- 3) 1인당 자산취득비 518만원(2020년 기준 4,197,000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에 증원 인원 16명을 곱하여 산출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치경찰지원관을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6억 4,200만원, 2032년 28억 8,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6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치안행정협의회(A)		64	64	64	64	64	320
자치경찰 지원관	보수	2,133	2,197	2,263	2,331	2,401	11,325
	기본경비	81	83	86	89	91	430
	기관부담금	281	292	303	314	326	1,516
	자산취득비	83	—	—	—	—	83
	소계(B)	2,578	2,572	2,652	2,734	2,818	13,354
추가재정소요(=A+B)		2,642	2,636	2,716	2,798	2,882	13,6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치안행정협의회(안 제48조), 자치경찰지원관(안 제58조)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